

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

석유사업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, 제46조 제10호(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)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◆ 약어표 ◆

□ 석유사업법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
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1.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

| 유형 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가중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중소규모 (5만 리터 미만) | - 6월 | 4월 - 10월 | 8월 - 1년6월 |
| 2 | 일반규모 (5만 리터 이상, 50만 리터 미만) | 4월 - 10월 | 8월 - 1년6월 | 1년 - 3년 |
| 3 | 대규모 (50만 리터 이상) | 8월 - 1년6월 | 1년 - 3년 | 2년 - 4년 |

| 구분 | | 감경요소 | 가중요소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특별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단순 가담 ○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○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 누범 |
| 일반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○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○ 단속 회피 시도 ○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○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○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○ 진지한 반성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 |

2.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

| 유형 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가중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| - 6월 | 4월 - 10월 | 8월 - 1년6월 |
| 2 | 정량미달판매 · 부피증가 판매 | - 8월 | 6월 - 1년 | 10월 - 1년6월 |

| 구분 | | 감경요소 | 가중요소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특별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단순 가담 ○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○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(1유형) 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아자 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○ 자수 또는 내부 고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종누범 |
| 일반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○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(1유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○ 단속 회피 시도 ○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(1유형) ○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,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(2유형)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지한 반성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○ 이중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 |

[유형의 정의]

1.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 법정형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짜석유제품 제조·수입·저장·운송·보관 또는 판매 |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, 제29조 제1항 제1호 |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|
|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·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·판매·저장·운송 또는 보관 |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, 제29조 제1항 제3호 | |

가. 제1유형(중소규모)

-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- 위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은 제조·공급·수입·저장·운송·보관 또는 판매한 양으로서 여러 행위에 걸쳐 중복되는 수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(이하 같음).

나. 제2유형(일반규모)

-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만 리터 이상, 50만 리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.

다. 제3유형(대규모)

- 가짜석유제품 등 판매량 등이 50만 리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.

2.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| 유형 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 법정형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 |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, 제39조 제1항 제8호 |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| 2 | 정량미달 판매 |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, 제39조 제1항 제2호 | |
| | 부당한 부피증가 판매 |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, 제39조 제1항 제3호 | |

[양형인자의 정의]

1.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

가.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단순 가담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범행을 주도·계획·지휘하지 않고,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
 -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소액의 운송료, 수수료 등을 받고 단순한 운송·저장·보관 등만을 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정품에 가짜석유제품을 소량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
 -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라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 -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(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)
 -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(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)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마.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·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
 -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,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
 - 범행에 사용된 생산,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,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
 -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
- ※ 다만,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바.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

-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원료공급행위를 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

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
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.

사.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
자로만 취급한다.

아.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

○ 이미 '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'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
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.

※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
자로만 취급한다.

자. 단속 회피 시도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감시장치, 출입 통제장치 또는 도피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
- 단속 회피를 위하여 다른 용도의 합법적인 제조시설, 공장 등으로
위장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○ 다만, 위의 요소가 '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(특별양형인자)'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.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

가.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

하는 경우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단순 가담

- 범행을 주도·계획·지휘하지 않고,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.

다.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(1유형)

-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및 범행 횟수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.

라.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판매량 또는 이득액이 매우 많은 경우
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-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
 -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(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,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)
 -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등유 등을 경유 또는 적합한 연료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(1유형, 다만 사기죄 등이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

니한다)
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마.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(1유형)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·기계 등에 직접적인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한 경우
-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대기오염, 중독 등을 일으킨 경우
- 범행에 사용된 생산, 운반 또는 저장시설 등에서 폭발, 중독 등 중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

※ 다만,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바.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,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(2유형)

○ 이미 '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'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.

※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.

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1.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
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2.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[공통원칙]

1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2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3.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사유로 고려한다.

[다수범죄 처리기준]

1.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2.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3. 동종경합범 처리방법

-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량 등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,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.
 - ② 다만,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3을 감경하고,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/2을 감경하되,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.

-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 유형과 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 유형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, 아래의 '이종경합범 처리방법'의 예에 따른다.

4. 이종경합범 처리방법

-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- 다만,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
II. 집행유예 기준

| 구 분 | 부정적 | 긍정적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주요 참작 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○ 3유형인 경우(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) ○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○ 동종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 ○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○ 단순 가담 ○ 1유형인 경우(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) ○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(용량·용도위반 등 판매) ○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(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) 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 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 |
| 일반 참작 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○ 단속 회피 시도 ○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○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, 제44조 제6호, 제46조 제10호,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○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○ 진지한 반성 없음 ○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○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(가짜석유제품 제조·판매 등) ○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○ 진지한 반성 ○ 피고인이 고령 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|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
- 전과의 기간 계산
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